

문서번호	생활보장과-108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활주거담당	생활보장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심규철	이상월	심진숙	01/05 도일환		
협 조					

2015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행계획

2015. 01.

교육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2015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행계획

저소득 근로 빈곤층에 대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I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II

사업목적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타 자활사업(보조사업) 참여조건에서 제외된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구 자체사업 별도편성

III

사업개요

참여대상자

- 보조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구 자체사업 : 차상위 계층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재산 및 소득이 차상위 기준 이하인 자(포함)

사업기간

- 보조사업(국시비) : 연중추진(1월 ~ 12월)
- 구 자체사업 : 연중 10개월 추진(2~7월, 9~12월)
 - 고령자 참여에 따른 혹한기 및 혹서기 사업 일시중단(1월, 8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총 예산 : 613,000천원

- 보조사업 : 563,000천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구 자체사업 : 50,000천원(구비 100%)
- 사회보험 가입
 - 보조사업 : 고용, 산재, 연금보험 가입
 - 구 자체사업 : 산재보험 가입

《보험관련 참고사항》

- ▶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가입제외
- ▶ 연금보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가입제외 대상이었으나
연금보험법 개정예 따라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가능
- ▶ 산재보험 : 당연가입대상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개정예 따라 임의가입 →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일반)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고용안정, 직업능력은 가입대상이나 실업급여는 제외)

인건비 지급기준

- 보조사업 : 24,800원(급여 21,800원, 실비 3,000원) X 20일(월평균)
- 구 자체사업 : 24,800원(급여 21,800원, 실비 3,000원) X 10일

2014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명)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목표인원	참여인원	비고
보조사업	570,000	548,682	96.2%	75	89	
구 자체사업	50,000	33,910	67.8%	20	13	

IV

2015년 사업추진 방향

2015년 사업추진 기본방향

○ 보조사업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시행
- 자활역량평가표 평가점수에 따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및 희망리본사업 등 자활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자활사업으로 유도

○ 구 자체사업

-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기타 공공일자리사업 탈락자 등) 적극 발굴
- '11년 폐지수거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13년 구자체 참여자 계속 참여(8명)

참여대상자

○ 보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1)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근로의욕증진대상자(점수가 45점 미만)
 - 2) 연령 및 건강 등을 감안하여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자
 - 3) 간병 및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 구 자체사업

- 연령 및 건강 등을 감안하여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재산 및 소득 인정액이 차상위기준 이하인 자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재산 및 소득이 차상위기준 이하인 자

참여인원

- 보조사업 : 77명/월
- 구 자체사업 : 20명/월

□ 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

- 선정기준 적합 수급자 배치
- 선정기준 적합자 전원 참여(예산범위 내)
- 참여자 우선순위

1) 조건부수급자(1순위) → 자활급여특례수급자(2순위) → 일반수급자(3순위)

2) 조건부수급자 우선배치 후 예산범위 내 순위별 참여

※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지형(보조사업) 자활사업 참여금지

○ 구 자체사업

- 신청자격

1)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자료가 있을 경우 적용(예:기초노령연금 등)

2)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과금액에 따른 소득기준이 차상위 기준 이하인자

→ '15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15년 1월중 별도 통보

3) '11년 폐지수거노인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13년 구 자체 참여자(8명)

■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차 상 위 (120%)	740,737	1,261,257	1,631,625	2,001,995	2,372,364	2,710,332

□ 추진일정

○ 보조사업 : 선정기준 적합자 전원 참여(예산범위 내)

- 사업실시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 구 자체사업 : 신청접수 및 선발자 해당 동 배치

- 신청접수 : 2015. 01. 19(월) ~ 01. 23(금)
- 선발배치 : 2015. 02. 02(월)
- 사업실시기간 : 2015. 02 ~ 07 , 2015. 09 ~ 12 (연 10개월 실시)
- ※ 1월(혹한기), 8월(혹서기)은 참여자의 건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일시 중단

□ 대상사업

○ 사업분야

-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사업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 노동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 하천정비, 불법침지류 제거, 뒷골목 청소, 재활용품 분류 등 경노무 사업

○ 제외사업

- 공원관리 등 별도의 자체예산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 불가함

□ 급여지급 방법

- 급여기준(일/5시간 근무) : 24,800원(급여 21,800원, 실비 3,000원)
- 급여지급방법 : 해당 월 사업종료 후 익월 5일 전까지 개인별 계좌지급 원칙
 - ※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자 요청시 가족계좌 입금가능
- 본인 사정으로 지각·조퇴한 경우 실근무시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
 - ※ 급여 : 21,800원[(기준급여 X 실근무시간/5시간) + 3,000원(실비)]
- 주차, 월차수당 지급
 - ▶ 지급대상 : 보조사업 참여자
 - ※ 구 자체사업 참여자는 주차, 월차수당 해당없음

□ 근무시간 및 조건

- 보조사업 : 1일 5시간, 주5일 근무(월평균 20일)
- 구 자체사업 : 1일 5시간, 주 2~4일, 월 10일 근무
 - ※ 사업부서 여건에 따라 월10일 이내 주 2~4일 유동적으로 사업추진
- 근무시간(공통)

- 근무시간 : 09:00 ~ 15:00 (5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 (중식 및 휴식)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근무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조정가능
예) 출근시간을 07시로 조정
- 사업특성상 야간근무(새벽 및 심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야간 근무시간의 3.5시간을 주간근무 5시간에 준하여 처리가능
※ 야간 근무시간 : 20:00 ~ 07:00

참여자 관리

- 동 주민센터에서는 현장지도 책임자를 임명하여 근로인원을 점검하고, 작업량을 부여하는 등 사업개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
-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 급여, 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사항 등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 특히, 급여에 관한 사항(일당, 급여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투입 전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예방
 ※ 참여신청서(붙임#1)에 참여자의 서명(날인) 받아 비치할 것
- 사업 참여자의 연령, 사업장별 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감독 및 보고

- 자활사업참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통보
-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건, 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
(안전사고, 보도기관취재, 기타 중요한 민원 등)

VI

행정사항

- 2015년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제출 : '15. 01. 23.까지
- 자활근로사업 근무상황부(사본) 및 추진실적(월보) 제출 : 매월 25일한
- 자활근로사업 관계공부 작성비치(붙임참조)
 - 작업일지, 근무상황부, 참여조건

- 붙임 1.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신청서(양식) 1부.
2.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작업일지(양식) 1부.
3.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근무상황부(양식) 1부.
4. 자활능력평가표 1부. 끝.